

대전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나1055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나10554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단12162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변론 종결2022. 3. 15.

판결 선고2022. 4. 19.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단12162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36,041,8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41,8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24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매도 당시 채권자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14.부터 2017. 5. 19.까지 소외 회사 및 C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2019. 6. 27. 실제로 성립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보증채무자인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7. 25.에 체결되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사고는 위 체결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9. 5. 11.과 2019. 5. 18.에

발생하였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위 체결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19. 6. 27.에 성립하였다.

② 소외 회사에 대한 2019. 7. 24.자 기업여신/담보현황일보(갑 제9호증)에 기재된 연체기산일 중 가장 빠른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18. 12.

2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직원 급여 지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고, 달리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채권에 대한 소외 회사의 연체가 발생한 2018. 12. 28.경에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에 관하여 2021. 11. 4. 작성된 신용정보공동망 조회서(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관리정보는 2019. 4. 16.경부터 등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공공정보1)는 등록된 내용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일반적으로 연체정보 등록사유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금, 이자 등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7호, 제10호2)에서 정한 사전구상권이 2018. 12. 28.에 곧바로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설령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2018. 12. 28.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사전구상권 내지 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현정

판사최희정

판사김윤중

별지

포함된다.

2)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 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 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7.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정보 제외)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10.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